



#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

## 01. 개정사항

○ 여행업 업종 명칭 및 등록 기준 자본금 변경('21.9.24字)

구 분		자 본 금	
현 행	개 정	현 행	개 정
일반여행업	<u>종합여행업</u>	1억원	<u>5천만원</u>
국외여행업	<u>국내외여행업</u>	3천만원	
국내여행업		1천5백만원	

## 02. 주요내용

- 기존 '국외여행업'을 등록한 자는 '국내외여행업'을 등록한 자로 간주
- '국내외여행업'만 등록하고 '국내여행업'을 폐업하여도 내국인 대상 국내·외 여행 관련 영업이 가능함  
(기존 '국외여행업' 및 '국내여행업'을 겸업하던 업체의 영업 범위와 동일)
- "내국인의 국내여행 관련 영업활동만" 영위하는 것을 희망하는 업체는 '국내여행업'만 등록하면 됨(기존과 동일)



코로나19 감염병 창궐의 어려운 여건에도  
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